

# 영상저작물 활용에 관한 도서관의 저작권 쟁점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pyright Issues Using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정경희 (Kyounghee Joung)\*\*

이호신 (Ho-Sin Lee)\*\*\*

최상희 (Sanghee Choi)\*\*\*\*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키워드: 영상저작물,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cinematographic works, reproduction right, public performance right, copyright,  
rental right, public transmission right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이 연구 중 영상저작물 저작권 문제 분석에 사용된 질문은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과제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중 일부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leehs@hansung.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hchoi@cu.ac.kr)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12월 1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31(4), 179-200,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179]

## 1. 여는 말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저작권의 문제라고 할 때 ‘문제’는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용자가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나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만 법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생소하여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이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주로 전자의 차원에서 특히 공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연권이 도서관의 시청각실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개인열람실에서 시청에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상물의 공연에 부과하는 저작권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그 예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연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를 상영하는 것이므로 공연권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외의 다른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환경은 계속 변화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저작물의 형식도 다양해지면

서 저작물 이용행태도 다각화된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변화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도서관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화는 오락뿐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위한 텍스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대출하기를 원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은 대출서비스를 하거나 시청각실과는 별도로 10여명이 시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영상물의 대출은 도서와 달리 훼손과 손실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이를 대비하여 대출용 복제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사서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상황으로 다가오게 된다.

즉, 계속 변화되는 저작물 이용환경은 끊임 없이 사서가 저작권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들고 이들이 저작권법을 해석하게끔 요구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문제를 반영하여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연수프로그램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도서관 현장의 실무과정에서 사서들이 겪고 있는 세부적인 저작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매우 개론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몇 시간의 연수교육에서 세부적인 저작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개별사서에게 모두 제공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이 겪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교육의 내용을 조금은 더 구체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연권의 문제로만 다루어졌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서관 현장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부분적으로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서관에서 영상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둘째, 영상물 서비스 과정에서 사서들이 만나는 저작권 문제는 무엇인가?
- 셋째, 사서들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를 위하여 수행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서 영상물 서비스 현황 조사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보다 영상물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고 활용도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황조사를 위하여 2013년 5월 8일~6월 3일까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7일~6월 7일까지 전국의 각급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3개 협의회에서 회원 도

서관 934개관에 설문 의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메일로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내용은 영상물 소장 및 대출 서비스 현황, 관람 시설 현황, 관람 현황이었다.

〈표 1〉 설문지 회수율

관종	배포/회수	배포	회수	회수율
공공		676	204	30.2%
대학		258	91	35.3%
계		934	295	31.6%

회수된 설문응답지는 총 295부(공공도서관 204부, 대학도서관 91부)였다. 관종별 설문 배포와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분석은 회수된 응답 가운데 답변 작성이 부실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거나 같은 도서관에서 이중으로 제출된 응답을 제외한 288부만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로 무응답으로 제출된 답변이 상당수 있었고, 무응답은 응답자수에서 제외하여 설문 결과를 처리하여 각 항목별로 총 응답자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도서관에서 영상물 활용과 관련한 사서의 저작권 문제 파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2013년 7월 9일~7월 1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설문을 실시하면서 도메리(도서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에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질문을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작성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3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이 이들 설문지에 제

시한 저작권 관련 질문은 약 100여개였다. 설문 응답자 소속기관은 대학도서관 15, 공공도서관 13, 학교도서관 5, 전문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4개 유형기관이었다.

저작권에 관한 사서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이외에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인, 도메리의 저작권 관련 질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저작권 문화』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저작권 사례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질문의 수는 모두 253개였으며, 그 중 영상자료에 대한 질문은 43개(16.7%)였다. 수집한 질문을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연구보조원이 질문내용을 질문자별로 입력한 뒤 연구자 중 1인이 각각의 질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1명의 질문자가 여러 개의 질문을 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질문상황이 되는 도서관종, 저작물 유형, 저작권 유형, 업무유형을 기술한 뒤 2명의 공동연구자가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상물 관련 질문 43개를 추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일반적으로 도서자료 및 비도서자료 모두에 적용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배포권(법 제20조)이며 영상물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공연권(법 제17조)이다. 복제권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법 제2조의 22)에 대한 권리이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이나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법 제2조의 7)에 대한 권리이다. 또한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것(법 제2조의 23)에 대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특정한 경우에 재산권자가 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재판절차에서 이용하거나(법 제23조)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때(법 제25조) 그리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복제(법 제28조), 사적인 목적으로의 복제(법 제30조) 시험문제로 복제(법 제32조) 할 때 복제권이 제한된다. 또한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하에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즉, 배포권은 1회에 한하여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제한 규정(법 제31조)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공중에게 공개된 도서관이 소장된 자료를 이용자 요구에 따라 1인에게 일부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할 때, 보존을 위하여 복제할 때,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절판된 자료를 복제할 때 복제권은 제한된다. 또한 도서관이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거나 이를 도서관 내외 도서관끼리 전송의 방식으로 전달할 때도 복제

권과 전송권은 제한된다. 디지털 복제 및 공간 전송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 구연, 상영 등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권리인데, 이 권리는 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관중 및 청중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공연하거나,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연의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도서관 등의 비영리 문화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연권 제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물에만 적용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저작권 제한은 인류의 지적 생산물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배분적 원리를 반영(이호흥, 2010)한 것이며, 특히 공연권의 제한은 국민들이 비용 지출 없이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병규, 2012)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선행연구

이호신(2006)은 도서관 실무 가운데 공연권과 관계가 있는 연주회, 동화구연, 영상물 상영회,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물의 이용자 제공 등이 공연권 면책에 해당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는 공연권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후 공연권과 관련되는 사항은 도서관계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연권과 관련되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권 관련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 정책토론회(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를 개최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공연권 제한 조항이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반과 영상물의 분리 입법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도서관의 공연권 면책의 근거를 구성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삭제 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도서관의 영상물 관내 열람을 저작권료 징수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논자에 따라서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이루어지는 음반이나 영상물의 관람 행위까지도 공연의 범주에 포함(이호흥, 2003)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정경희, 2012; 이호신, 2013)도 존재한다. 정경희(2012)는 도서관의 영상물의 도서관 관내 이용이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자의 영상물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호신(2013)은 공연권 조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관에서의 영상물의 개별 관람이 공연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편 최상희, 정경희, 이호신(2013)은 도서관의 영상자료 서비스와 저작권에 관련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은 저작권료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권료 지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영상물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의 위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후 이루어진 후속 연구에서 정경희(2013)는 한국영화배급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도서관의 영상물 공연 현황을 온당하게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기 지역 84개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영상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되는 쟁점은 정경희(2013)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대상 범위와 과금 기준의 적절성 여부이다. 그 대상 범위는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열람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정경희(2012)에 의해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호신(2013)에 의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인 과금 기준의 적절성 파악은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이용 실태를 파악한 정경희(2013)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제한된 지역과 공공도서관이라는 단일 관중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고, 웹사이트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관련 논의를 위한 충분한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과금 기준의 적절성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연구는 전적으로 공연권 문제로 제한되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영상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과 구분되고 할 수 있다.

### 3.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이용 현황<sup>1)</sup>

#### 3.1 영상저작물 소장 및 대출서비스 현황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영상물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응답한 도서관은 190개관으로 소장현황은 <표 2>와 같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1,000점 이하에서부터 9,001점 이상까지 영상물 소장규모가 다양하였는데, 특히 3,001~5,000점, 5,001~7,000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각각 28개관과 27개관으로 공공도서관 127개관의 22.0%와 21.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대학도서관의 경우 9,000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9,001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개관으로 응답한 대학도서관 63개관의 65.0%였다.

관외대출 시행여부에 응답한 도서관은 총 288개관이었다(<표 3> 참조). 공공도서관 201개관 가운데 관외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은 130개관(64.7%)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관외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60개관인 것으로

1) 본 장의 설문조사는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 수행된 것으로 설문 배포 및 회수에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받았다.

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87개관이 응답하였으며, 45개관(51.7%)이 관외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외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21개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외대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도서관이 관외대출을 시행하는 도서관 보다 2배 이상 많다.

〈표 2〉 영상물 소장 현황

점	관중	공공	대학	계
~1,000		14	2	16
1,001~3,000		24	6	30
3,001~5,000		28	4	32
5,001~7,000		27	5	32
7,001~9,000		16	5	21
9,001~		18	41	59
계		127	63	190

〈표 3〉 영상물 관외대출 서비스 여부

관중	대출				계
	시행	미시행	기타	계	
공공	60	130	11	201	
대학	21	45	21	87	
계	81	175	32	288	

### 3.2 영상저작물 이용 시설 현황

도서관이 영상물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비하고 있는 시설 현황은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영상물의 관람 또는 공연 행위가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초가 된다. 영상물 이용 시설 현황은 개인 관람 부스와 2~4인 관람 부스, 5~15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감상공간, 집단감상공간(공연장)으로 구분되었다.

〈표 4〉 1인 관람석 수

좌석수	관중	공공	대학	계
1~10		124	20	144
11~30		26	38	64
31~50		4	12	16
51~70		3	5	8
100석 이상		0	3	3
계		157	78	235

개인용 열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35개관이었다(〈표 4〉 참조). 공공도서관의 경우 157개관이 개인 부스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79%에 달하는 124개관이 10석 미만의 좌석을 갖추고 응답하였으며,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11석~30석인 경우가 38개관(48.7%)이었다. 대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10석 이하, 대학도서관의 경우 20석 내외로 영상물 이용을 위한 개인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2~4인 관람석 수

좌석수	관중	공공	대학	계
1~2		40	8	48
3~4		19	6	25
5석 이상		3	20	23
계		62	34	96

2~4인석 관람석 현황에 응답한 도서관은 모두 96개관이었다(〈표 5〉 참조). 공공도서관의

경우 1~2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0개관, 64.5%), 대학도서관은 5석 이상을 설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개관(58.8%)으로 가장 많았다.

〈표 6〉 소규모 집단 열람실 수

좌석수 \ 관종	공공	대학	계
1	20	15	35
2~5	3	8	11
계	23	23	46

5~15인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감상실 현황에 응답한 도서관은 모두 46개관이였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 20개관(87.0%), 대학도서관 15개관(65.2%)이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전체 1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공연장 좌석 수

좌석수 \ 관종	공공	대학	계
50 이하	52	26	78
51~100	48	5	53
101~200	31	1	32
201석 이상	13	2	15
계	144	34	178

한편 영상자료를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시설의 좌석 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연장의 좌석수에 대해서 응답한 178개관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144개관, 대학도서관은 34개관이며, 그 가운데 43.8%에 해당하는 78개관이 50석 이하의 공연장을 구비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29.8%인 53개관이 51석에서 100석 이하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8%인 32개관은 101석에서 200석의 좌석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의 36.1%에 해당하는 52개관이 50석 이하의 좌석을, 33.3%인 48개관이 51~100석, 21.5%인 31개관이 101~200석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전체 응답 도서관 34개관의 76.5%인 24개관이 50석 이하의 좌석을 갖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3.3 영상저작물 열람 및 공연 현황

도서관에서 영상물의 1인 좌석과 2~4인을 위한 소규모 좌석의 열람 상황은 〈표 8〉과 같다. 1인 열람석의 이용 현황에 응답한 도서관은 총 217개관이며, 그 가운데 89.9%인 195개관이 1일 10회 이하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은 148개관이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138개관이 1일 10회 이내의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대학도서관은 69개관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1일 10회 이내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57개관이다.

한편 2~4인 열람석의 이용 현황은 총 79개관이 응답하였으며, 공공도서관 52개관 가운데 3개관을 제외한 49개관이, 대학도서관 27개관 가운데 4개관을 제외한 23개관이 1일 10회 이내에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5인~15인의 소규모 공동감상실은 38개관이 응답하여 그 가운데 44.7%인 1개관이 1일 1회, 2회 8개관, 3회 5개관, 4회와 5회 이상이 2개관, 3개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영상물 1일 열람자수

열람석 횟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열람석 횟수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1~10	138	57	195	49	23	72	1	9	8	17
11~20	7	4	11	3	2	5	2	4	4	8
21~30	0	3	3	0	1	1	3	1	4	5
31~40	1	1	2	0	1	1	4	1	1	2
40회 이상	1	2	3	0	0	0	5회 이상	2	1	3
기타	1	2	3	0	0	0	기타	1	2	3
계	148	69	217	52	27	79	계	18	20	38

〈표 9〉 공연장에서의 월 평균 공연 횟수

열람석 횟수	관중	공공	대학	계
1~4		92	12	104
5~10		33	8	41
11회 이상		8	4	12
계		133	24	157

〈표 9〉는 공연장에서의 월평균 공연 회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총 157개관이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월 1~4회 상영이 92개관으로 응답한 공공도서관 133개관의 69.2%에 이르렀다. 월 5~10회 상영한다고 응답한 공공도서관도 33개관(24.8%)으로 적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월 1~4회 공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0〉은 이용 시설별로 이루어지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상물의 월평균 열람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응답한 도서관은 많지 않았다. 1인 열람석의 경우 월 10회 이하로 상영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3개관 가운데 34개관(46.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101회를 초과하는 경우도 11개관(15.1%)에 달하였다. 2~4인 열람석에서 역시 월 10회 이하 상영하는 경우가 29개관 가운데 14개관(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1회 이상인 경우도 4개관(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동감상실에서의 상영이 10회 이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도서관 8개관 중 7개관(87.5%)이었다.

〈표 10〉 발행 후 6개월 미만 영상물의 월 평균 열람횟수

열람석 횟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공공	대학	계
~10	17	17	34	10	4	14	3	4	7
11~40	11	2	13	5	1	6	0	0	0
41~70	4	4	8	0	2	2	0	1	1
71~100	6	1	7	0	3	3	0	0	0
101~	5	6	11	1	3	4	0	0	0
계	43	30	73	16	13	29	3	5	8

공연장에서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상물의 월평균 상영 횟수에 응답한 도서관은 19개관이었다(〈표 11〉 참조). 응답도서관 중 공공도서관의 경우 1회 이하에 6개관(42.9%), 2~5회에 6개관(42.9%)이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2~5회에 응답한 기관이 3개관(60.0%)이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15회 이상인 곳도 1개관이 있었다.

한편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응답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한 공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설문지의 답변이 1회부터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아예 질문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6개월 미만 영상물 상영 횟수

횟수 \ 관종	공공	대학	계
~1	6	1	7
2~5	6	3	9
6~8	2	0	2
15회	0	1	1
계	14	5	19

### 3.4 조사 결과의 요약

첫째,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은 대부분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약 3,000점 내외의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도서관의 경우 9001점 이상을 소장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외로 대출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28.1%)이 하지 않는 도서관보다 더 적었다.

둘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영상물 열람을 위한 1인 열람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2~4인 또는 혹은 5~15인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감상실은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도서관만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은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규모는 대개 100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

셋째, 도서관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공동감상실, 공연장 등에서의 1일 열람 횟수는 10회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대체로 주 1회 정도 혹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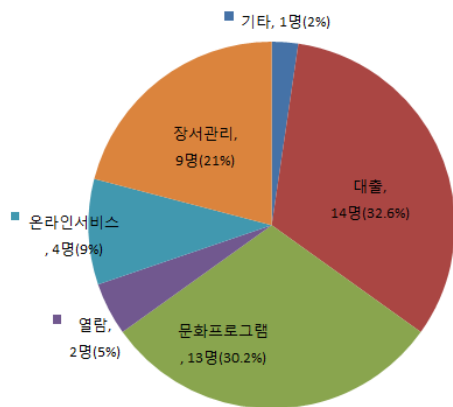
넷째,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연장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영상저작물 서비스 과정에서 사서의 저작권 질문 분석

### 4.1 질문의 업무영역별 분포

도서관에서 영상물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사서들의 고민은 주로 문화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대규모 공연장에서의 영화상영시 발생

한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하여 영상물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출과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대출과 관련한 질문은 14명(32.5%), 영상물을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경우는 13명(30.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자료의 훼손과 관련한 질문이나 보존 및 구하지 못하는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 장서관리 차원의 질문을 한 경우는 9명(21%)이었다. 그 외에 영상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4명, 9%), 복제물의 열람 문제(2명, 5%), 이용자의 영상자료 복제 문제(1명, 2%)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업무영역별 질문의 분포 현황

업무영역별 질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과 관련한 질문은 관외 대출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관외 대출 후 이용의 방법 즉,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 기업

등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의 이용을 위한 대출이나 동아리에서의 이용 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딸림자료 등 특수한 형태의 자료의 대출 문제, 훼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영상물의 대출을 위하여 복제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한 것이 있었다.

문화프로그램을 위하여 영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의 저작권 질문은 영상물을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상영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그 외에, 상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영시점이 영상물 발행 이후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질문, 영상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질문, 영상자료의 주제나 상영의 목적이 교육적인 목적일 때 상영 가능성에 대한 질문, 영상물에 상영금지 안내문이 있을 때 상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영상자료의 상영 방법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하였다.

장서관리와 관련한 질문은 영상물이 도서자료에 비하여 훼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서비스를 할 경우 원본은 보존하고 복제물을 제작하여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유통되지 않는 영상물을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다.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위하여 소장하고 있는 영상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영상자료의 일부분을 디지털로 만든 후 이를 전송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 외에 영상물의 복제본을 도서관 내

〈표 12〉 업무영역별 질문 내용

업무영역(질문자수)	질문내용(질문자수)
대출(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외대출 가능성(6)</li> <li>• 대출 후 동아리에서 상영(2)</li> <li>• 기업에 대출(1)</li> <li>• 딸림자료의 관외대출(2)</li> <li>• 대출을 위한 복제본 제작(2)</li> <li>• 대출을 위한 딸림자료의 복제본 제작(1)</li> </ul>
문화프로그램(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상영 가능성(4)</li> <li>• 무료상영가능 시점(2)</li> <li>• 무료상영 인원수(3)</li> <li>• 행사목적 및 영상자료주제에 따른 상영가능성(2)</li> <li>• 상영금지 안내문이 있는 경우(1)</li> <li>• 구입 불가능한 영상자료의 공연방법(1)</li> </ul>
장서관리(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을 대비한 복제(6)</li> <li>•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2)</li> <li>• 구매할 수 없는 TV 프로그램 녹화(1)</li> </ul>
온라인서비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내 VOD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3)</li> <li>• 영상자료 일부를 디지털화한 후 전송(1)</li> </ul>
열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본 열람(1)</li> <li>• 관내열람을 위한 복제본 제작(1)</li> </ul>
기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의 영상자료 복제(1)</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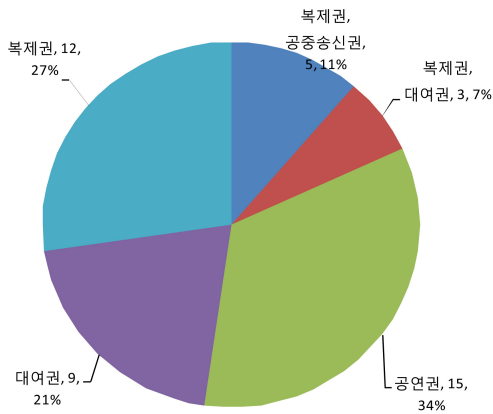
에서 열람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내 열람을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는지의 문제,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영상물을 복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표 12〉 참조).

#### 4.2 저작재산권에 따른 질문의 분포와 내용별 분석

##### 4.2.1 질문의 분포

질문을 저작재산권에 따라 구분한 결과 그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예상대로 영상물을 대규모 공연장 혹은 소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상영해주는 것과 관련한 질문 즉, 공연권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15명, 34%), 장

서관리용 복제 혹은 인터넷을 활용한 영상물 서비스 확대,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물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복제본의 이용가능성 등 복제권과 관련한 질문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12명, 27%). 또한 영상물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체의 가능성, 대출 목적에 따른 가능성, 대출자료의 특성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9명, 21%).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관련되는 질문들도 있었다. 소장한 영상물을 복제한 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관내 열람서비스하는 것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질문이며(5명, 11%) 복제한 영상물을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3명, 7%)은 복제권과 동시에 대여권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권리별 질문의 분포

#### 4.2.2 질문분석

##### 1) 공연권과 관련한 질문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권리에 따른 질문을 세부적으로 다시 구분해보았다(〈표 13〉 참조). 우선 공연권과 관련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영상물을 상영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그 외에 상영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관람자나 상영의 목적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영 참여 인원수에 대한 질문,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다.

도서관이 영상물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때 일반 도서자료와 가장 다른 부분은 공연의 방식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이다. 즉, 도서는 일반적으로 1명이 1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면 영상물은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람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한다. 즉,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

에게 공개하는 행위이며, 영상물을 공중에 보여주는 것은 공연권과 관련된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공연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9조)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연권자로부터 허락을 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령 구매한 영상물의 표지에 단체 상영 금지라는 표현이 있어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면 도서관은 이를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은 영상물의 상영이 공연권과 관련되는 것은 명확히 인지하였지만, 공연권의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영상물 상영을 시청하는 대상자와 목적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재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혹은 교육 목적으로 교육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해도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도서관에서의 영상물 상영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은 공연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내용, 관람자가 누구인지, 그 공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고, 단지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연권의 제한 중 도서관을 위한 특별한 규정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물을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 질문자 중 1명은 이 기간이 명확히 몇 개월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다른 1명은 6개월 유예규정이 영화 이외에 뮤지

〈표 13〉 공연권 관련 질문 구분

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공연권	상영 자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를 공연장에서 상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li> <li>• 단체로 관람(상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li> <li>• DVD 영상자료 상영 시, 저작권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하는 경우가 많음.(50%이상의 자료가 공공기관 상영 금지라고 안내문이 나옴)</li> <li>• DVD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행사나 교육에 활용 시 저작권 문제</li> <li>•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지역도서관에서 상영하는 교육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영화나 교육용 DVD를 구입하여 상영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li> <li>• 저희가 3일 동안 하루에 2편씩 총 6편의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학교 중앙도서관에 영상세미나실이구요, 영화는 전부 외국영화입니다. 상영을 해도 되는지요?</li> </ul>
	대상자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화비디오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약 200석 규모의 회의실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비디오 중에서 교육적인 내용의 것을 선정하여 상영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혹, 법에 위배된다면 위배되지 않고 상영하는 방법은 없나요?</li> <li>• 간혹 교육관련 자료 및 DVD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li> <li>• 학교에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DVD를 구입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식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학생들의 공부 및 여가 활동에 영향을 주고 기타 다른 목적은 없는데 저작권 법에 위반이 되나요?</li> </ul>
	6개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에서 상영이 가능한 DVD는 출간 후 얼마나 지난 자료인지?</li> <li>• 영상자료 중 발행 6개월 미만의 자료를 다중 공연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한다면, 6개월 미만자료의 다중공연(상영) 사실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요?</li> <li>• DVD 영화자료 상영은 출시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영이 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DVD 클래식 공연실황 및 뮤지컬 공연실황자료를 매주 상영하고 있는데, DVD 상영에 있어서 음악 공연, 뮤지컬 공연과 같은 장르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상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li> </ul>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VD를 단체 상영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단체상영인원: 40명)</li> <li>• DVD 영화상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몇 명 이하가 모여야 공공관람이 아닐까요?</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VD로 제작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하지만 꼭 상영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li> </ul>

컬이나 음악 공연 등 특정 내용을 담은 자료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또 1명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영상물을 공연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그 허락을 어느 곳으로부터 얻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의 6개월 유예규정은 판매용 영상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저작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무관하다.

영상물 상영을 관람하는 인원수에 대한 질문

은 공연의 개념 중 '공중'을 구성하는 인원수에 대한 질문으로서, 공연과 열람의 구분을 위한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열람은 공중이 아닌 1명 혹은 특정 소수가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질문들은 공연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명까지가 가능한지

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복제권과 관련한 질문

복제권과 관련한 질문 중 대다수는 영상자료 구입 후 파손과 훼손, 손실이 염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을 제작하여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표 14〉 참조). 도서자료의 경우 일부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자체가 불가한 상태가 아니지만 영상자료의 경우 훼손될 경우 작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자료의 경우 도서자료에 비해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복제본 제작을 원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복제는 저작권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권리이므로 이 권리가 영상물에도 적용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여러 제한규정을 통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도서관에서의 복제이다. 질문자들이 영상물의 복제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훼손과 손실을 대비한 복제가 저작권법 제한규정에 포함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면책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은 보관된 자료를 보존용으로 복제할 있으며, 이 때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

〈표 14〉 복제권 관련 질문 구분

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복제권	파손 대비용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혹은 관리 소홀로 원본이 손상되었을 경우, 재구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복사본 제작은 안되는데, 이용이 너무 기간 한정적이지(짧지 않는지) 않은가요?</li> <li>• 저작권 문제로 복사본 제작을 하지 않아 <u>파손된 경우, 다시 재구입하지 않으므로</u> 자료보존이 어렵다.</li> <li>• 원본 DVD를 복사해서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은 이용시켜도 괜찮은지요?</li> <li>• 도서관 내에 소장중인 CD, DVD의 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는 자료의 <u>손망실 대비</u> 및 장애인 이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li> <li>•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의 정품을 구입하였으나 <u>원본의 보호를 위해</u> 각 1개씩 복제를 하여 원본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복제물을 도서관내에서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요?</li> <li>• DVD를 파손, 오훼손을 대비하여 <u>보관용으로 복제하는 경우</u> 법의 저촉 여부</li> </ul>
	디지털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테이프 자료의 경우, 점점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사라져 비디오테이프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 자관에 소장중인 비디오테이프자료를 <u>DVD로 변환</u>하는 기기가 있는데요, 자관에서 DVD로 변환하여 서비스 및 보존하는 것에는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런지요?</li> <li>•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를 <u>디지털화</u>할 수 있는지의 문제(단, 디지털화시 일절 편집을 하지는 않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소장 DVD 자료의 <u>개인용 저장장치</u>로 복제하는 경우?</li> <li>•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원본은 없고 복제물만 있는 경우 이 복제물을 도서관내에서 열람시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요?</li> <li>• <u>공중파 TV</u>를 통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u>녹화</u>해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시키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대개의 자료는 구입을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구입을 문의하면 <u>판권이 없다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u> 하거든요.</li> </ul>

을 경우에는 보존용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훼손된 자료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복제는 가능하지만, 훼손될 것을 예상한 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도서관의 재정 상황에 의하여 훼손된 영상물을 다시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훼손을 대비한 복제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복제권과 관련한 또 다른 질문은 기존의 아날로그 영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것은 앞서 훼손을 대비한 복제와는 다른 질문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포맷의 영상물을 새로운 형식에 맞추어 변경하여 보존하고 이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 면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설령 그것이 보존용 디지털화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복제가 불가하다. 이 경우엔 디지털 형태로 새롭게 생산된 영상물을 구매하여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맞다.

그 외 영상물의 복제와 관련한 질문들로는 이용자에게 DVD를 복제해주는 문제, 원본이 아닌 복제물의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의 문제, 유통되지 않는 자료를 TV에서 녹화하여 서비스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용자에게 DVD를 복제해주는 것과 설령 해당 자료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이용자 서비스를 위하여 이를 녹화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도서관에 부여한 면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복제물이라면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 3) 대여권과 관련한 질문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도서자료를 대출하는 것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게 있었다. 대출 자체의 문제부터 딸림자료, 최신자료 등 자료 특성에 따른 대출가능성이나 회사에서의 관리를 위한 대출 등 그 이용 목적에 따른 대출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표 15〉 참조). 이러한 질문의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영상물을 어문저작물과 다르게 생각하여 대출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저작권에 대한 지나친 긴장감 차원과 둘째는 저작권법 제21조 대여권을 인식하면서 도서관의 영상물 대출이 이 권리와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대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판매용 영상음반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이다. 따라서 도서관 소장 영상물은 그 내용이나 목적, 자료의 형태,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 4)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대여권 관련한 질문

두 가지 권리가 함께 관련되는 질문으로 우선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과 관련한 것이 있었다(〈표 16〉 참조). VOD 서비스를 위하여 기존 영상물을 디지털화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혹은 멀티미디어실 내에서 또는 폐쇄된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디오이프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디지털 형식으로 구매



〈표 15〉 대여권 관련 질문 구분

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대여권	대출 자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련 DVD 등을 수집하여 <u>대여도 하고</u> 감상실에서 이용자를 위한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닌가요?</li> <li>• 영화 DVD를 <u>관외로</u>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li> <li>• DVD 자료 활용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서의 1 copy 대출을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li> <li>• 공공도서관에서 DVD 대여가 저작권법에 위배 혹은 위배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li> <li>• 우리 도서관에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물론이고 DVD, 개입, CD-ROM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대출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다. 법전도 뒤져보고 개정 저작권법도 봤는데 복제에 관한 것만 있고 대출에 대해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법률에 대해 문의한이라. 적용 법조문도 알려주세요.</li> </ul>
	자료특성에 따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자료가 <u>부록으로</u> 비도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내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시키던 것을 단행본과 함께 관외대출시키고자 하는데 혹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li> <li>• 공급한 것은 일반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의 <u>부록으로</u> 제공되는 CD-ROM, 디스켓,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를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대출해주거나, 또는 그사본(복제물)을 제공해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li> <li>• <u>최신자료서비스</u>시 저작권법 위반인지 의심을 하면서 제공할 때 곤란한 경우 발생</li> </ul>
	대출목적에 따른 대출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 도서관에서는 개인 비디오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 한명이 본인이 소속해 있는 회사의 단체 관람을 위해 비디오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비디오테잎 대여가 가능한지요? 교양 비디오만을 대여 받겠다고 했는데 내용이나 제작 단체에 따라서도 적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li> </ul>

〈표 16〉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대여권 관련 질문 구분

권리구분	질문내용
복제권   공중송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서관에서 홈페이지 제작시, 1. 자체 제작한 비디오테잎 2. 구입한 비디오테잎(어학, 골프교실, 수영교실 등) 3. 방송국에서 구입한 비디오테잎 등과 같이 구입 또는 제작한 비디오테잎을 VOD로 제작하여 교내에서 대학구성원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li> <li>• 디지털화후, 해당 동영상을 도서관의 멀티실내 서버(VOD서버)에 게재하여 멀티실을 이용하는 한정된 다수에게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작권 문제에 위배되지 않을까요?</li> <li>• 대학도서관에서 비디오테잎이나 DVD, 오디오테잎 등을 동영상이나 MP3 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저작권법에 침해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파일을 폐쇄된 네트워크(도서관내에서만)에서 공유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li> <li>• 대학도서관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타이틀을 한 타이틀 더 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구입한 타이틀입니다. 비디오테이프의 대여나 반출이 아니라 동일 건물 안에서(도서관내에서)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 근거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li> <li>•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비디오테이프, LD등) 일부를(각 편당 서두 1분30초 정도) MPEG 또는 REARFILE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li> </ul>
복제권   대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VD 등 비도서 관외대출 확대에 따른 <u>사본제작</u>의 가능성 여부 발생</li> <li>• 복사 후 대여 가능한가?</li> <li>• CD나 음악자료보다 도서인쇄자료에 딸린 딸림자료의 복사후 대출 문제(예를 들어 아이들 영어도서의 딸림자료인 CD를 복사하는 경우 빈번)</li> </ul>

한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을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인다. 그것이 제한된 공간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중송신권과 관련된다. 질문 내용에 공중송신이라는 법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디지털화된 영상물을 도서관 내에서 열람', '홈페이지 제작', '서버에 게재', '네트워크에서 공유',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 등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나타나 있다. 특히 공중송신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그 이용 범위를 특정 대상과 특정범위로 제한하였을 때 그러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중송신의 가능성이전에 공중송신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라는 복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해당 저작물이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설령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 혹은 도서관 간에만 전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어문저작물인 도서자료에 적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하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제권 및 대여권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DVD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특히 딸림자료를 복제하여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대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도서자료는 흔히

복본을 구입하여 대출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영상물은 그것이 빈번하게 이용되더라도 복본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를 복제하여 대출서비스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상물이 도서관의 핵심 자료가 아니므로 복본구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영상물의 복제본 제작이 용이해 서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자료가 훼손되었을 때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경우와 절판된 자료를 다른 도서관이 요청하였을 때이다. 대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자료와 마찬가지로 복본을 구입해야 한다.

## 5. 논의 및 제언

### 5.1 논의

#### 5.1.1 영상물 시청 설비의 다양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다양성

본 연구에서 영상물 이용 현황과 그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조사한 결과 영상물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영상물은 기기를 통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서관은 이러한 시청과 관련한 설비를 개인용부터 2~3인용, 소규모 집단용, 단체 관람용 등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들과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관람의 경우 상영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 질문에서부터 조금 더 구

체적으로는 상영이 가능한 영상물의 발행시점 등에 대한 질문과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수의 규모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영상물 시청 설비가 1인석 또는 시청각실이라는 대규모 상영 형태에서 2~3인석이나 소규모 집단 설비가 추가됨으로써 이러한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5.1.2 영상물의 저작권 문제는 공연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곧 공연권의 문제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서들의 저작권 질문을 분석한 결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대출, 장서관리, 온라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시 되고 있었다. 영상물은 그것을 공중을 대상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어문저작물 즉 도서자료와 크게 다른 점이고 저작권법은 이것을 공연권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이용 즉, 대출이나 보존을 위한 복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복제나 전송은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저작권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질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었다.

#### 5.1.3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질문

대표적인 것이 대출가능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도서자료의 대출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영상물에 대해서는 대출에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판매용 음반저작물의 영리목적의 대여에 대한 대여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대출도 그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영상물이나 음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사서들이 과도하게 긴장한 탓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느 경우이던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부재로 인한 것은 분명하다.

#### 5.1.4 보존의 문제는 도서자료와 다른 접근

보존을 위한 복제에서 보이는 사서들의 인식도 도서자료의 복제에 대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자료의 훼손대비나 대출확대를 위해 구입한 책을 1부 복제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복제본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물에 대해서는 유독 훼손을 대비한 복제와 대출 확대를 위한 복제를 시도하면서 그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고민한다. 이것은 영상물이 도서자료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 것이 아니므로 가격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자료의 특성상 복제가 쉽고,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도서자료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복본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것 등이 이유라고 보여진다.

## 5.2 제언 및 결어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이용확대는 분명 도서

관에서 영상물 서비스 확대에 연결된다. 이를 반영한 듯 도서관은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 제공, 디지털 환경에 맞춘 VOD 서비스, 대출 확대, 매체변환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영상물의 저작권 문제는 그것의 공연과 관련한 문제로 축소되어 관찰되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도서자료의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문제들도 있었고, 도서자료에 대해서 의문시 되지 않는 내용이 특별히 영상물에 대해서만 문제시 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저작권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영상물은 도서자료와 이용방식이 명확하게 다르므로 그와 관련한 저작권 규정 즉, 공연에 대한 규정이 도서자료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외의 대다수 이용 즉, 복제나 대출, 공중송신 등은 도서자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사서들은 때로는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질문을 분석하면서 특정 질문(예컨대 영상물의 대출 가능성 여부나 영상물의 공연 가능성, 팸플리자료의 대출가능성 등)은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여졌다. 반대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였다더라도 그 적용에서 모호함이 있는 문제들(예컨대 몇 명의 시청자가 있어야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복제본의 도서관 내 열람, 영리목적의 공연이 예상되는 대출 등)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연수프로그램으로 저작권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3~4시간 혹은 몇 일간의 강의만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이해와 각각의 권리 및 그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계속 변경된다. 사서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나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과정은 아니다. 도서관 업무와 관련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연수과정을 통하여 습득할 것은 아니다. 연수과정은 저작권법에서 개정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 도서관과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하여 숙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현장에서의 영상물 사용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 역시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넘어서 다양한 응용과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사서들이 저작권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답변하거나 그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다 전문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의 ALA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다양한 저작물 이용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실무서를 개발하는 것도 도서관 현장에서의 기초적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서의 경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도서관이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시청을 위한 설비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시설별로 이용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연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관외대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직무연수과정은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와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질의응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및 사서를 위한 저작권 질의응답서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복잡함과 영상물 서비스 환경의 다양화로 인하여 사서들이 의문시하는 저작권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도서관에서 영상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법의 개정 문제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복잡함과 영상물 서비스 환경의 다양화로 인하여 사서들이 의문시하는 저작권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도서관에서 영상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과 관련한 법의 개정 문제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병규 (2012).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권리*, 68, 137-163.
-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 이호신 (2013).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49-268.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249>
- 이호흥 (2003). 저작권신탁관리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30, 42-55.
- 이호흥 (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3-155.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33>

정경희 (2013).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43-365.

최상희, 정경희, 이호신 (2013).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정보관리학회지*, 30(3), 317-335.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3.317>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Sanghee, Jung, Kyoung-Hee, & Lee, Ho-Sin (2013).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317-335.

Jung, Kyoung-Hee (2012).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133-155.

Jung, Kyoung-Hee (2013).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43-365.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2). Relay discussion on the copyright policy.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Lee, Byoung-Kyu (2012). Revisiting §2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Creation and right*, 68, 137-163.

Lee, Ho-Heung (2003). A plan for digitizing and service through Copyright Trust. *Digital Library*, 30, 42-55.

Lee, Ho-Heung (2010). A study on public performance right in digital environmen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Lee, Ho-Sin (2006).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Doseogwan*, 61(1), 45-62.

Lee, Ho-Sin (2013).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249-268.